

「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주요내용

1. 제정 이유

「인삼산업법 시행규칙」에 제28조의2(영문증명서의 발급)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서식, 범위,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영문증명서 발급 범위 및 발급 기관

- 1) 국내 제품 수출시 정부가 신뢰성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로서 통일성 있는 증명서(위생증명서, 자유판매증명서, 검사증명서)를 수출국에서 요구함
- 2) 인삼류*를 수출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
* 홍삼, 태극삼, 백삼, 흑삼
- 3) 인삼류의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,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

나.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규정

- 1)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함
- 2)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,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·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, 수출신고필증, 인삼류검사증명서(분석성적서 포함)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
* 다만,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제조업신고필증,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검사성적서 제출 생략 가능
- 3)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의 기준, 방법, 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

다.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기준 규정

- 1)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기준을 구체화함
- 2) 영문증명서는 위생증명서(Health Certificate), 자유판매증명서(Certificate of Free Sales), 검사증명서(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)로 구분함
- 3)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의 처리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출국 요구사항에 부응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